



#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[시행 2021. 11. 19.] [법률 제18178호, 2021. 5. 18., 일부개정]

이번 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(제19조 제1항 및 제19조의4 제1항).

## 관련구성원

### 기영석

변호사

02-316-4021

ysgi@shinkim.com

### 박성기

변호사

02-316-4280

skipark@shinkim.com

### 김종수

변호사

02-316-1678

jsokim@shinkim.com